

[재]김해시복지재단 정관

(제정) 2014.01.15. 규정 제01호
(일부개정) 2015.01.02. 규정 제22호
(일부개정) 2016.03.15. 규정 제29호
(일부개정) 2017.03.28. 규정 제48호
(일부개정) 2018.02.05. 규정 제56호
(일부개정) 2020.03.13. 규정 제81호
(일부개정) 2021.12.16. 규정 제11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김해시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재단은 노인·여성·장애인·청소년 등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3.15.>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사무소는 경상남도 김해시 신어산길 46에 둔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 조사·연구·교육사업 및 정책·프로그램 개발 보급 <개정 2017.03.28.>
2. 사회복지 자원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3.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사회복지기금의 조성관리 및 배분사업
5.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김해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5조(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재단의 설립 및 자본증식을 위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재산의 관리)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포기 등 기본재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7조(재원) 재단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시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자체 사업 수입금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8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예산 및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에 관한 서류를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03.15., 2020.03.13.>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잉여금의 처리) 재단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1조(임원의 보수) 재단은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근직 대표이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 및 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3.13.>

제12조(보고, 검사, 감사) 재단은 시장 및 의회가 그 업무·회계 및 재산 등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검사,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비상근)
2. 대표이사 1명(상근)
3. 이사 10명 이하(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명

② 대표이사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의 승인이 없는 한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1. 삭제
2. 삭제

③ 삭제

[전문개정 2020.03.13.]

제14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거나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 이사장 및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함)에서 추천된 자 중 시장이 임명하며, 추천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규」에 따른다. 단, 비상근·무보수 임원의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조례 및 정관에 의해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03.15.>

1. 김해시장
2. 업무소관 담당국장
3. 삭제 <2017.03.28.>

④ 선임직 이사는 복지분야 전문가, 사회복지 학계 및 기관·단체 등을 포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으로 추천한 자 중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비상임·무보수 선임직 이사의 경우 공개모집 방식을 간소화 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직무감사와 회계감사로 구분하며, 직무감사는 복지재단 업무소관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회계감사는 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으로 추천한 자 중 시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20.03.13.]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이사장 및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03.15., 2020.03.13.>

②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3.15.>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총원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이사 및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신설 2015.01.02.>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6.03.15., 2020.03.1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비위면직자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취업제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8.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동 법 제71조에 의해 처벌받은 사람
- ②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 ④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17조(임원의 해임) ① 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대표이사를 해임 할 수 있다. <개정 2020.03.13.>

1.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이사장과 체결한 성과협약에 비해 매우 미흡한 성과를 내는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03.13.>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3.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12.16.>

- ② 대표이사는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④ 삭제<삭제 2021.12.16.>
- ⑤ 삭제<삭제 2021.12.16.>
- ⑥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 하고 소속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전문개정 2020.03.13.]

제18조의2(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표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당연직 이사(업무소관 담당국장)
2. 선임직 이사 중 연장자

②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8조 제2항에 따른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재단의 직제 및 정원 규정에 의한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12.16.]

제19조(겸직금지) ① 이사는 이 재단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 재단의 이사,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4장 이 사 회

제20조(이사회 구성) 재단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제21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0.03.13.>

③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03.15., 2020.03.13.>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임 및 해임, 파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법령이나 이 정관 또는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이사회 개회와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5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26조(조직 및 직원 등) ① 재단의 조직·정원·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내부 규정에 정하는바에 따른다.

② 삭제 <2020.03.13.>

[전문개정 개정 2017.03.28.]

제27조(공무원 파견) 이사장은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수익사업

제28조(수익사업) ① 재단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6.03.15.>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29조(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재단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0조(정관변경) 이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해산 및 합병) 이 재단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3.13.>

제32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재단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3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재단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4조(공고의 방법) ① 이 재단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 및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2.>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8장 보 칙

제35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규정 제1호 2014.01.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재단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정 제22호 2015.01.02.>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9호 2016.03.15.>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48호 2017.03.28.>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56호 2018.02.05.>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81호 2020.03.13.>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12호 2021.12.16.>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6.03.15.>

기본재산 목록

구분	금액	출연자	비고
현금	금팔억원 (800,000,000원)	김해시	